

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1384호

나. 발 의 자 : 김용호 의원(찬성자 11명)

다. 발의일자 : 2023년 10월 16일

라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·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관련 행사, 세미나, 포럼 등을 개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함(안 제5조2).

나. 소상공인의 제품·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시책을 규정함(안 제8조제2항제12호).

다. 소상공인 제품의 전시·홍보 지원을 위한 시책을 규정함(안 제8조 제2항제13호).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준석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 기념행사에 대한 개최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창업 및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,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작업장의 디지털화와 소상공인 제품의 전시·홍보를 추가하고자 발의됨.

나. 주요 개정사항 검토

(1)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근거 마련(안 제5조의2)

- 안 제5조의2는 시장이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관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, 세미나,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,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·법인·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.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5조의2(소상공인의 날 등) ① 시장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

	<u>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관련 행사, 세미나,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.</u> <u>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는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u>
--	--

- 이와 관련하여 「소상공인기본법」(이하 “기본법”)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, 소상공인의 사회적·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해 매년 11월 5일을 소상공인의 날로 정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하고 있음.
- 이에 서울시는 2023년부터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기(氣)살리기 페스타, 유공 표창 등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,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(2)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정비(안 제6조)

- 안 제6조는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창업 및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관련하여 이미 폐지된 희망경제위원회 풀뿌리 특별위원회를 대신하여 소상공인 관련 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한 것임.

개정 이전	현 행 (2023년 12월 29일 개정)	개 정 안
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①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8. (현행과 같음) <u><신 설></u> 9. (현행과 같음)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「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의 풀뿌리 특별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. ④·⑤ (현행과 같음)	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①(생략)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~ 8. (생략) <u><신 설></u> 9. (생략)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④·⑤ (생략)	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①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8. (현행과 같음) <u>9. 소상공인 창업 및 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</u> <u>10. (현행 제9호와 같음)</u>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,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④·⑤ (현행과 같음)

- 이와 관련하여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정부(중소벤처기업부)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수립·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에 창업·혁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¹⁾,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서울시 시행계획에 창업·혁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정부와 서울시가 수립하는 소상공인 지원계획 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,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과 자생력 강화에

1)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7조(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·시행) ①·② (생략)
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
2.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, 전망에 관한 사항
3.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
4. 소상공인 창업,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④ (생략)

기여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.

- 한편 2012년부터 경제정책 자문기구로 운영된 ‘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’는 타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의 이유로 2020년 이후 회의개최 실적이 없어 2023년 3월 27일 폐지되었는바, 안 제6조제3항은 희망경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풀뿌리 특별위원회가 수행하던 시행계획의 자문 기능을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음.
- 그러나 제6조제3항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에서 희망경제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로 “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²⁾”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, 이를 개정안의 내용에 반영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< 수정의견 >

현행	개정안	수정의견
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①·② (생략) ③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	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,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	제6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①·②(현행과 같음)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대해 제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거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2)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」 제6조의2(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정책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② (생략)

(3)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가(안 제8조)

- 안 제8조는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으로 작업장의 디지털화와 소상공인 제품의 전시·홍보를 추가하고,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것임.

현행	개정안
제8조(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) ① (생략) ②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. 1. ~ 11. (생략) <신설> <신설> <신설>	제8조(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11. (현행과 같음) 12. <u>소상공인의 제품·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시책</u> 13. <u>소상공인 제품의 전시·홍보 지원을 위한 시책</u> ③ <u>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u>

-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소상공인의 지원·육성 시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는 것은 시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임.
- 특히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시책은 「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4조³⁾에서 소공인을 대상으로 규정된 사항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.

3) 「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4조(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) ① ~ ④ (생략)
⑤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제품·기술 가치의 향상을 위하여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작업장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⑥ (생략)

- 한편 안 제8조제3항은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유관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지원조례”) 제11조(사무의 위탁)에 이미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위탁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중복입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
- 이러한 지적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법률이 기본법과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나뉘어져 있고, 조례 또한 법률에 대응하여 동 조례와 지원조례로 구별되어 있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, 두 조례의 관계에 있어 동 규정이 서로 상충되거나 동 규정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측면에서 법리상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< 소상공인 관련 법률체계 >

법률	조례
「소상공인기본법」	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」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	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혜진	02-2180-8057